

# 退溪의 經濟意識에 대한 一考察

李 元 烈\*

## • 目 次 •

- |             |              |
|-------------|--------------|
| 1. 머리말      | 2) 검소한 생활 자세 |
| 2. 退溪家의 경제력 | 3) 성실한 納稅    |
| 3. 퇴계의 경제의식 | 4) 경제적 합리성   |
| 1) 철저한 營產   | 4. 맺는말       |

## 1. 머리말

퇴계 이황에 관해서는 그 동안 다방면에 걸쳐 많은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다. 철학·문학·교육·정치 사상 등 퇴계학 전반에 걸쳐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국내에서는 100여권의 퇴계학 전문 연구서가 출판되었고, 석·박사 논문이 60여편, 개별적인 연구논문이 1천 여편 이상 발표되었다.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등의 해외에서도 퇴계학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다. 또한 '국제 퇴계 학회'에서는 '퇴계학 국제 학술 대회'를 16회나 개최해 왔고, 거기서 영어로 발표한 논문만도 200여편에 이른다.<sup>1)</sup> 그런데 오직 퇴계의 경제 관련 논문만큼은 지금까지 거의 발표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필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는 성리학적 우월 의식에서 퇴계와 같은 대학자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금기시 해 온 경향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퇴계는 경제 사상가의 범주에서는 늘 제외되어 왔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셋째는 퇴계 연구가들이 퇴계의 학문과 인격을 신비화하는 경향에 빠져 그의 경제 문제에는 손을 댈 엄두를 내지 않은 경향을 들 수 있다. 실제로 필자가 관련 논문들을 두루 찾아 보아도 퇴계의 경제 문제에 관한 논문은 1980년대 까지 李樹健 教授의 연구가 유일한 것이었다.<sup>2)</sup> 이수건 교수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1990년에 "退溪 李滉家門의

\* 경북대학교 윤리교육과 박사과정

- 1)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退溪學 研究論叢』(대구 : 중문출판사, 1997), "간행사" 및 제10권 p.677 참조.
- 2)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嶺南大學校出版部, 1979) ; 『慶北地方古文書集成』(嶺南大出版部, 1981) ; "光山金氏禮安派의 世系와 그 社會·經濟的 基盤" 『歷史教育論集』1輯, 1980) ; "嶺南士林派의 在地的 基盤" -朝鮮前期 安東地方을 中心으로- 『新羅伽倻文化』12輯, 1981) ; "古文書를 통해 본 朝鮮朝社會史의 一研究" -慶北地方 在地土族을 중심으로- 『韓國史學』

재산유래와 그 소유형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sup>3)</sup> 이 논문은 그 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퇴계의 ‘家書’와 ‘退溪孫子女分財記’ 등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退溪家의 재산 유래와 규모를 소상하게 밝힌 노작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렇지만 이수건 교수의 논문은 역작임에도 불구하고 퇴계의 경제관과 경제의식 전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들에 착안하여 필자는 성리학자로서의 퇴계의 경제의식에 대하여 하나의 試論으로 서술해 보고자 한다. 한국 성리학의 儒宗으로 공인받고 있는 퇴계라는 큰 석학에게 혹시라도 누를 기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기도 하지만 퇴계 역시 16세기 조선이라는 어려운 시대와 역사적 공간에서 살다 간 인물이고 보면 그의 경제의식을 검토하는 작업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퇴계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진면목을 새롭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나아가 퇴계학의 또 다른 일면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고가 典據로 삼은 퇴계의 저술은 ‘家書’이다. 家書란 ‘가족 간의 왕복 서간’을 의미한다. ‘退溪家書’를 일별해 보면 현존하는 家書는 총 937편이다. 그 중에는 4 촌 이내의 혈족에게 보낸 家書가 608편, 그리고 인척에게 보낸, 準家書가 329편이다. 혈족에게 보낸 家書 중에는 長子 窩에게 보낸 家書가 317회로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長孫子 安道에게 보낸 家書가 121회이다<sup>4)</sup>. 혈족에게 보낸 家書 중 전체의 3분의 2가 친 자손에게 보낸 셈이다. 그런데 아들과 손자에게 보낸 家書에는 거의 매 편마다 경제에 관한 말이 나온다. 친 혈육에게는 심중의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 家書를 통해 볼 때 우리는 퇴계가 경제 문제를 대단히 중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퇴계는 친 자손들에게 왜 그다지도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현했을까? 그 깊은 그의 시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 자신 평생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살았으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된 경제적 기반 위에서 학문을 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제 퇴계의 이러한 삶에 나타난 경제의식에 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sup>5)</sup> 본고에서는 長子 窩에게 보낸 ‘家書’를 주로 검토하고, 간혹 손자에게 보낸 家書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손자에게 보낸 편지에는 전혀 꾸밈이 없고 정에 넘치는 소박한 내용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9. 韓國精神文化研究員, 1987).

3) 이수건,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서울 : 일조각, 1997), pp.237-270 참조.

4) 權五鳳, 『李退溪家書の總合的研究』(京都 : 中文出版社, 1990), pp.35-39 참조.

5) 본고의 논의를 전개하는 데 인용한 자료로는 “退溪家書”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는 『조선 왕조실록』과 한국경제사 관련 단행본을 간혹 인용하였다.

## 2. 退溪家의 경제력

이수건 교수는 위에서 언급한 “退溪 李滉家門의 재산유래와 그 소유형태”라는 논문에서, 퇴계가 초기에는 다소 곤궁하게 살았지만 중년 이후부터는 前後妻財를 分衿받고 또 자신의 규모있는 治產理財로 인해 150구 내외의 노비와 수천 두락(마지기)의 전답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러한 경제적 기반 위에서 도산서원을 퇴계학파의 本山으로 유지하게 하였다고 관련 文記를 치밀하게 고증하여 주장했다.<sup>6)</sup> 그런데 퇴계의 '家書'에는 항상 가난에 고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대학자의 학문 역정에 경제적 형편까지 어려웠다 하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退溪家書에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모습이 단 한 군데도 나타나 있지 않다. 退溪家書와 李教授의 논문 내용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에 관해서는 보다 깊고 체계적인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지만, 필자는 여기서 家書에 나타난 기록을 중심으로 退溪家의 경제력을 고찰하려 한다. 우선 생활고에 찌들리는 모습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비는 아직도 부족하냐? 밀, 보리를 얼마나 거두었느냐? 늦곡식이라도 심어서 썩이 나야 할텐데 어떻게 하느냐? 식구는 많고 양식은 다 떨어졌을테니 그냥 굽고만 있는 것이 아니냐?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전에 김백영과 바꾼 쌀 섬은 보내왔느냐? 올해는 살아갈 일을 보통 때와 같이 대처해서는 안 될 것이니 철저히 절약해 아껴 써서 어떻게든 연명을 해 나가는 것이 지극히 옳은 일이다.<sup>7)</sup>

6) 이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퇴계 死後 17년 후에 그 손자녀가 퇴계가의 재산을 分衿한 '和會文記'를 분석한 결과 퇴계가의 토지 규모는 田 1,895.2두락(마지기), 耕 1,199.5 두락, 합해서 3,094.7두락이라고 했다. 단, 여기에는 퇴계 死後 17년 간 아들 寡에 의해 증식된 재산도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퇴계의 이러한 재산 규모는 당시 在地土族의 수준에서 본다면 중간수준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퇴계가의 경제력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생산력과 오는날의 생산력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또한 당시의 結負制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斗升 역시 오늘날의 斗升으로 정확히 환산이 되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가령, 당시에는 1結 당 離米(왕겨만 벗긴 쌀) 수확량을 300斗로 잡았는데, 이는 필자가 朴時亨의 '結負換算表'를 기준으로 하여 오늘날의 두승으로 대략 환산해 본 결과 약 86.3밀(17.26가마)이 되었다. 이는 오늘날의 생산량과 어렵잖아 비교해도 매우 적은 수확량이다. 더구나 당시 結負制는 相互不同한 면적의 等結에다 똑같이 300斗라는 同量의 수확량을 책정했기에 보유 토지가 몇 等田에 해당하는지를 구명하지 않고서 토지의 면적만으로 재산규모를 평가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1結은 1등전 3,117坪부터 6등전 12,468坪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기 때문이다.(朴時亨, 『鮮土地制度史』, 북한과학원출판사, 1961, 서울 신서원에서 1994년 재편집, pp.472-473 ; 趙璣濬, 『韓國經濟史新講』, 서울, 일신사, 1994, pp.204-205 참조.)

7) 雨澤至今未治耶, 兩麥所收幾何, 晚穀付種立苗如何如何, 口衆食匱無乃飢困罔措耶, 不勝念悶念悶, 今年之事不可以常例處地, 須極圖撙節爲連命之計至可至可(『退溪全書(이하 全書)』遺集外篇 卷5).

위의 편지는 퇴계가 53세 때 아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 때 퇴계는 大司成(정 3품 당상관)의 고관이었다. 흉년이 들면 걱정이 되는 것은 아무리 양반이라도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양식이 떨어질까 걱정하고, 어떻게든 연명을 해 나가도록 돌려하는 말은 벼슬로 보나 당시 양반의 제반 특권으로 보나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다. 퇴계가 아들에게 거짓을 편지에 썼을 까닭은 없을 것이다.

역시 53세에 아들에게 쓴 또 다른 편지를 보자.

날씨가 이처럼 가물다가 또 하늘이 곡식 날알 만한 비를 내리니 옛날의 傳記를 살펴보면 이런 경우 반드시 흉년이나 禍亂의 변고가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위아래가 모두 걱정이 태산 같아서 해야 할 바를 모르니 이를 어찌면 좋으냐? 우리 집의 사정으로 말하더라도 식구는 많고 쓸 곳은 번거로워서 보통 해우 경우라도 주립을 면할 수 없는 형편인데 더구나 이같은 흉년을 장차 어떻게 견디어 간단 말이냐? 이런 형편을 미리 요량해서 모든 쟁쟁이를 철저히 절약하여 窮乏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sup>8)</sup>

위의 편지에 쓴 “보통 해의 경우라도 주립을 면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때까지도 退溪家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늘 시달려 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편지를 쓰기 1년 전에 쓴 다음의 편지에는 가난에 찌들어 추위조차 이겨 내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나는 지난달 3일에 성균관의 벼슬에서 길리어 상호군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편안히 누워 지내니 다행스럽기는 하다만, 서울에 많은 눈이 오고 날씨는 호되게 추운데 땀감이 몹시 귀하니 병든 몸이 추위에 떠느라 조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날을 보내자니 하루가 일 년 같구나. 봄이 오면 한사코 내려갈 생각이나 다만 말미를 얻을 수 있을는지 그것이 지금부터 걱정이다.<sup>9)</sup>

위의 편지는 퇴계가 52세 때 아들 窩에게 쓴 것이다. 上護軍이 되어 출근하지 않고 집안에 누워 있으나 추운 날씨에 땀감이 부족하여 추위에 떨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여간해서는 꺼내기 어려운 말이다. 52세의 중년에도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여기서 퇴계 생존시의 재산 규모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sup>10)</sup> 퇴계의 世居地 였던 慶尙道 禮安縣 溫溪里(지금의 안동시 도산면 온혜동)의 入鄉祖는 퇴계의 조

8) 旱勢如此，又天雨草穀之實，考古傳記，必有飢荒禍亂之變云，上下憂惶，罔知所爲奈何奈何，吾家事言之，口衆費煩，雖如常歲不免凍餒之虞，況此凶歲將何以支，須預知此意，凡用度痛自節儉以備窘乏。(上同).

9) 余前月初三遞成均，爲上護軍，今尙閑臥似幸，但京師大雪苦寒，榮炭絕貴，病骨畏寒調攝甚難，以此度日如年，春來切欲下歸，但恐不得受由，預慮預慮。(上同).

10) 이수건, 앞의 책, pp.239-270 참조.

부 進土 李繼陽이다. 그 후손들은 眞城李氏 禮安派가 되었다. 李繼陽은 그의 부모로부터는 재산을 많이 분급받지 않았으나 그가 부유한 從祖(李仲位)의 養子가 되었고, 또 처가의 재산을 분급받아 온계에 卜居할 무렵에는 良田 數百頃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의 재산은 다시, 당시 시행되던 子女均分相續制에 따라, 그의 3자녀에게 균분되어 그 1/3이 퇴계의 父 進土 李埴에게 상속되었다. 李埴은 부모에게서 전계받은 재산에다가 그의 前後妻家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분급받았다고 볼 수 있으나 兩妻家가 모두 清貧한 家勢라서 그 量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거기에도 40대에 早死했으니 자신에 의한 재산 축적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다행히 퇴계의 生母 春川 朴氏의 규모있는 營產으로 인해 退溪家는 家勢를 겨우 유지하였지만 퇴계 부모의 재산은 7명이나 되는 자녀들에게 均分되었을 것이니 결국 末子인 퇴계에게 분급된 재산은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退溪父 子에 관한 財產文記가 아직 공개된 것이 없으니 퇴계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규모와 퇴계가 평생 동안 집적한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 전모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렇다면 퇴계가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와 녹봉은 어떠하였을까? 퇴계는 34세에 출사한 이후 줄곧 官界의 요직에 종사하며 빠르게 승진을 거듭하여 52세에 堂上官(成均館 大司成)이 되었다. 조선시대의 최고 관료급의 지위에 오른 것이다. 퇴계는 과연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았던 것일까? 이와 관련한 편지를 보기로 하자.

본래 녹봉이 준 데다가 이제 또 품계가 낮아졌으며 10월 이후에는 여러 차례의 제사 등의 일을 치러야 하니 이번 겨울에는 더욱 곤란할 것이 틀림없다. 추수를 해 보아서 만일 크게 흉년이 아니라면 1, 2석의 쌀을 준비하여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sup>11)</sup>

53세에 상호군(정3품 당하관)으로 재직하면서 寫에게 쓴 위의 편지에 의하면 祿俸으로는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퇴계가 살던 16세기의 경제 구조와 관련하여 당시 퇴계가의 실질적인 經濟力を 고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단순한 수치만으로는 퇴계 생존 당시의 經濟力を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도 관료들에 대한 생활보장은 토지와 祿俸이었다. 즉 토지를 분급하여 그 田租를 수취할 수 있게 하고, 아울러 祿俸도 지급하여 二元的으로 생활을 보장하는 대우체제가 제도화되어 있었다. 관료에 대한 토지

11) 本以減祿今又降品，十月以後又當有數次行祭等事，今冬勢必益困者，秋收若不至大欠，一二石米卜並量備，以送爲可(『全書』遺集 外篇 卷5)。

분급을 먼저 알아 보기로 한다. 李成桂를 중심으로 한 革新勢力은 고려시대의 田柴科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1391년부터 科田法을 제정하여 시행했고, 다음 해에 개국한 조선 왕조는 이를 이어 받아 개국 초부터 科田法에 입각하여 관료들에게 토지를 지급했다. 그러나 과전법은 분급한 토지가 세습화되고, 또 兼併되는 경향이 많아 지급할 토지가 부족하게 되자 1466년(세조 12년)에는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職田法으로 바뀌게 된다. 직전법도 시행 후 4년이 지나자 職田租稅를 국가에서 직접 수취하여 다시 관료에게 지급하는 官收官給制로 바뀌게 된다. 그러다가 관료수가 증가하고, 또 연산군의 사치로 인한 蕩盡과 연이은 흉년 등으로 인해 현직 관리들에게 지급할 토지조차 부족하게 되자 職田法은 1556년(명종 11)에 폐지되고 말았다. 이 때부터 관리들은 祿俸만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직전법도 실은 폐지되기 훨씬 이전부터 현직 관리들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하여 실제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sup>12)</sup> 따라서 퇴계는 출사<sup>13)</sup> 후 국가로부터 토지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고 오직 祿俸만을 받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퇴계가 생존한 16세기 당시 녹봉제도는 어떠하였고, 또 녹봉은 어떻게 지급되었는가를 알아 보기로 하자.<sup>14)</sup> 조선 역시 위에서 언급한대로 개국초부터 관료들에게 토지와 함께 녹봉을 지급해 왔다. 조선 녹봉제는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조선조 祿制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四孟朔頒祿制(正月, 四月, 七月, 十月 네 차례 지급)가 세종 21년(1437)에 처음 실시 되었다. 이는 세조 6년(1460)에 최초로 반포된 『經國大典』『戶典』에 별다른 변동없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조선조 祿制의 근간이 되었다. 그 후 직전법이 직전세로 바뀌게 되자(성종 원년 1470) 관료들에게 토지를 분급하여 收稅權을 인정해 주던 대우체제를 단계적으로 革除시키고 녹봉으로만 귀결시키려는 커다란 전환을 가져 오게 된다. 실제로 직전세를 官收官給해 주자 당대 관료들은 이미 그것을 녹봉으로 간주하게 되었다.<sup>15)</sup> 관수관급제하에서 토지에 대한 收租權은 녹봉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상태에서 관료층의 수가 증가하고 연속되는 흉년으로 인해 국가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녹봉을 줄이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재정사정은 중종대에 이르러서도 비슷하였다. 중종 7년(1512)과 20년(1525)에 기근을 계기로 녹봉 지급이 중지되었고<sup>16)</sup>, 중종 28년(1533)에는 계속된 凶荒으로 頒祿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廣興倉의 저축이 허갈되어 그 해 4월의 頒祿 때에는 百官의 祿俸을 매양 감축시킨 데 대해서 戸曹에서 미안의 뜻을 표하기도 하였다.<sup>17)</sup>

12) 朴時亨, 앞의 책, pp.157-170 참조.

13) 퇴계는 34세(1534)에 文科에 급제하여 承文院權知副正字라는 종9품 직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한다. (『年譜』34세조 참조).

14) 崔貞煥, 『高麗·朝鮮時代 祿俸制 研究』(경북대학교출판부, 1991), pp.227-271 참조.

15) 『成宗實錄』卷162, 成宗 15年 正月 任辰.

16) 『中宗實錄』7년 7월 임신 : 20년 11월 기묘 : 20년 12월 계묘.

퇴계는 그 이듬해(1534)에 대과에 급제하여 종9품의 가장 낮은 벼슬로 관직에 나가게 되나 이해에도 녹봉지급은 중지되었다.<sup>17)</sup> 그러나 明宗代에 이르러 국가 재정은 더욱 악화되어 갔다. 연이은 극심한 흉년으로 경비가 부족하여 명종 10년(1555) 11월에는 녹봉의 감축, 직전 감소 등 여러 가지의 긴축재정을 단행하였다.<sup>18)</sup> 그러나 이듬 해인 명종 11년(1556) 6월에는 “百官之職田既廢”라고 한 바와 같이 직전 자체가 폐지되었다. 계속되는 흉년과 倭變, 북방의 침입 등으로 국가의 재정재출은 많아지고 국가의 저축은 허갈되자 부득이 직전이 폐지되고, 아울러 녹봉도 감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때부터 관료들은 오직 녹봉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명종 말기에 이르러 국가재정은 더욱 악화되어 갔다. 명종 21년(1566) 10월에 特進官 愈鋒은, 당시 계속되는 흉년에다가 奸偽들의 弄奸마저 介在되어 국가 창고가 허갈되어 있는데, 백관에게 지급해야 할 녹봉의 수요량은 14萬石으로 증가했지만 창고의 저축은 26만 석 뿐이라고 말한다.<sup>20)</sup> 명종 시대 내내 국가재정이 극도로 부족했고, 관료들에 대한 녹봉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퇴계는 명종 시대에 仕宦期의 대부분을 보냈다. 위의 편지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 퇴계 晚年の 생활 형편은 어떠하였을까? 68세의 晚年에 장손자 安道에게 쓴 편지를 보자.

그러나 고금에 없는 水災로 인해 논밭이 크게 매몰되었다. 이미 많은 빚을 내어 썼는데 또 다시 이런 재앙이 겹치니 해를 어떻게 넘기느냐?

또 들으니, 은계의 여러 집들의 논밭이 거의 물혀버리고 말았다니 門族들의 살아갈 계획이 어떻게 될지 짐작할 수도 없구나. 답답하고 걱정스러움을 이길 수 없다.<sup>21)</sup>

이 때 퇴계는 종1품의 의정부우찬성을 거쳐 역시 종1품의 刑中樞府事로 재직하고 있었다. 실로 고관이었고, 학문적으로도 당대 조선의 최고 위치에 있었던 때이다. 그런데 水災가 나자 손자에게 빚 걱정을 하고 있다. 퇴계가 만년까지 어렵게 산 것이 틀림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상 退溪家의 살림살이를 家書를 통하여 추적해 보았다. 이수건 교수에 의하면 퇴계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그리 많지 않아 초년에는 다소 곤궁했으나, 前後妻財를 分衿받고, 또 자신의 치밀한 營產으로 인해 중년 이후에는 159口

17) 上同 권74, 중종 28년 4월 癸酉.

18) 上同 29년 12월 을미.

19) 『明宗實錄』 권19, 명종 10년 11월 壬子.

20) 上同 권33, 명종 21년 10월 己巳.

21) 但, 水災振古所無, 田畠大被壞沒, 既多受債, 又逢此災, 何以卒歲, 又聞, 溫溪諸宅田畠覆沒殆盡, 不知門族活計, 何歸不勝憂憫.(『全書』遺集 外篇).

내외의 노비와 수천 斗落의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였다.<sup>22)</sup> 그런데 퇴계의 家書에는 항상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退溪 父子의 分財文記를 찾아 분석하고, 아울러 16세기 당시의 도량형과 20세기 오늘의 도량형을 정확히 對比할 수 있어야 한다.

### 3. 퇴계의 경제의식

#### 1) 철저한 營產

퇴계는 무엇보다도 성리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시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퇴계 역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일생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시대와 가문의 아들로서 퇴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계를 꾸려 나가기 위해 營產에 무척 애를 썼던 것 같다. 물론 그는 주자의 성리학을 정통으로 계승·발전시켰고, 또한 성리학적 규범을 몸소 실천한 인물이기에 추호라도 성리학적 규범에 어긋나는 營產은 하지 않았다. 먼저 영산에 대한 퇴계의 기본 시각을 살펴 보고 아울러 영산과 학문 사이에서 갈등 하는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네가 처가에 얹혀 살고 있는 것이 본래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할 수 없이 몇 년이 지나왔는데 지금은 너의 형편이 더욱 어려우니 이를 어쩐단 말이냐? 그러나 가난은 선비라면 항용 그런 것이니 다시 무엇을 마음에 두겠느냐? 너의 아비가 평생 이 때문에 남의 비웃음을 산 것이 많으니 너라고 다를 수가 있겠느냐? 다만 굳게 참으면서 순리로 대처하고 자신을 낚아서 천명을 기다릴 것이다.<sup>23)</sup>

위의 편지는 45세에 司僕寺正(정3품 당하관)으로 있으면서 寓에게 쓴 것이다. 아들 寓은 이 때 결혼을 했는데도 형편이 어려워서 처가에 얹혀 살고 있었다. 아들의 그런 처지에 애타는 父情을 선비의 기상으로 간절히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서 퇴계 자신이 남의 비웃음을 살 정도로 가난하게 살아왔음을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순리로 대처해야지 理財에 매달리지 말 것을 道學者의 자세로 당부하고 있다. 또 다른 편지를 보기로 하자.

22) 단, 이수건 교수는, 그렇다고 하여 퇴계가 여유있게 살았다는 표현은 논문의 어느 곳에서도 말하지 않고 있다.

23) 汝之寄食於聘家本非好矣, 以汝勢難, 故困循累年, 今則汝勢尤難奈何奈何, 然貧窮士之常事亦何介意, 汝父平生以此被笑於人多矣, 況於汝乎, 但當堅忍, 而順處自修以待天可也.(『全書』遺集 外篇 卷6).

그리고 營產 등의 일은 역시 사람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이니, 네 아비가 평생에 아무리 疏拙했다고 해도 전적으로 하지 않을 수야 있었겠느냐? 그러나 안으로 文雅를 전공하면서 밖으로 혹시 應務한다면 士風을 떨어뜨리지 않을테니 해로움이 없겠지만, 만약에 완전히 雅尚함을 잊어버리고 경영에만 몰두한다면, 이것은 농부의 할 일이며 향리의 俗人들의 所爲인 것이다.<sup>24)</sup>

54세에 충무위상호군(정3품 당하관)으로 재직하면서 寫에게 쓴 이 편지에는 營產에 대한 퇴계의 기본 시각이 잘 표현되어 있다. 영산은 사람으로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임을 전제한 후, 선비의 雅尚함을 유지하면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유학자의 기본 자세가 잘 나타나 있다.

한편, 퇴계의 관직 생활은 出仕와 辭退의 연속이었다.<sup>25)</sup> 49세에는 풍기군수직을 버리고 낙향하여 삭탈관직까지 당하였다. 그러나 2년만에 소명을 받아 다시 조정에 나가게 된다. 조정에 있으면서도 늘 편지를 통하여 아들에게 가게 운영을 직접 챙기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여 준다.

너는 아직 오지 말고 4월 달에 付種을 대강 마친 뒤 아직 김매기가 시작되기 전인 농한기를 틈타 올라와서 여름을 나고, 7월에 蔭試를 보고 8월에 科試를 본 다음, 너의 서모를 따라서 함께 내려간다면 조금 편할 것 같은데, 너의 생각은 어떠냐? …… 그리고 2월에 서울에 올라와서 여름을 난다면 집안 일을 너의 妻가 혼자서 맡아야 하니 필시 처리하기 어려움이 많겠으므로 역시 未便하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다.<sup>26)</sup>

위의 편지는 54세에 충무위상호군(정3품 당하관)으로 재직하면서 아들에게 쓴 편지이다. 이 때 아들 寫은 이미 初試에 합격한 상태에서 다시 覆試에 응시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가려 했던 듯하다. 그러나 퇴계는 아들의 상경을 농한기에 맞추기를 권하고 있다. 퇴계의 家書에는 집안의 영산을 시종일관 아들에게 맡기고 있는 글들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어려운 집안 살림을 겨우 꾸려가는 데는 아들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심이 되었으리라 쉬이 짐작된다.

퇴계는 그래도 안심이 안 되었던지 위의 편지를 쓴 후 다음과 같이 두 차례나 아들의 상경을 연기시키고 있다.

24) 營產等事亦人所不能不爲者，乃翁平生雖疎拙亦豈全不爲乎，但內專文雅而外或應務，則不墮士風爲無害，若全忘雅尚沒頭經營，則是爲農夫之事鄉里俗人之爲，故云云耳(『全書』遺集 卷2).

25) 퇴계의 仕宦歷에 관해서는 李元烈, “李退溪 ‘言行錄’에 있어서 倫理的 實踐性에 관한 研究”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p. 9-10, 42-48 참조.

26) 汝姑勿來，待四月間付種措畢，未始除草之隙上來過夏，七月試蔭八月見試，仍隨汝庶母一時下去，則勢似差便於，汝意何，……且二月來京過夏，則家事汝婦獨在，必多難措，亦爲未便，故云云(『全書』遺集 권3).

너의 출발의 遲速에 대해서는 이미 편지에 다 말했으니, 내가 명한 대로 4월 경에 농한기를 텁타 올라온다면 제사, 농사, 成造 등의 일들이 순조로울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sup>27)</sup>

내가 가을이 되면 돌아간다고 해도 이미 너무 늦은 것인데, 가을에 안 돌아갈 이치는 절대 없다. 그런데 이제 네가 버리고 올라온다면 집에 일을 주간할 종(奴)이 없으니 耕農이 전폐될 것인데 돌아가면 무엇을 믿고 의지하겠느냐? 그래서 자꾸 말하는 것이다.<sup>28)</sup>

21세의 약관인 아들 簿은 집안 일보다는 자신의 과거 응시에 더 관심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퇴계는 어려운 집안 일을 아들이 주간하도록 간곡히 설득하고 있다.

한편, 조선시대의 농업에서 노동력의 원천은 노비였다. 退溪家 역시 주로 노비를 통해 농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인다. 퇴계 家書에도 노비 사역에 관한 글이 散見되고 있다.

榮川의 가을보리가 이미 익었을텐데, 타작의 감독을 종 연동(奴)에게만 전적으로 맡겨놓을 수 없으니 내일 잠깐 가서 감독하여 거두어 오는 것이 좋겠다.<sup>29)</sup>

은부(奴)란 자는 올해의 보리 타작을 지금까지 보고도 하지 않고, 작년에 바꾸고 남은 곡식과 피와 바꾼 무명 등을 아직까지 올려 보내지 않고 있으며, 지난 해의 身貢 또한 한匹도 보내지 않으니 頑慢하기 짝이 없다. 통렬히 懲治해서 하나 하나 찾아와야겠다.<sup>30)</sup>

退溪家의 노비 연동과 은부는 퇴계에게 믿음성이 부족한 종들이었던 듯하다. 그래서 퇴계는 타작의 감독과 田稅 수취를 아들이 사사건건 직접 쟁기도록 지시하고 있다. 때로는 과격한 방법까지 사용한 경우도 보인다. 그러한 예가 다음의 편지에 나타난다.

들으니 奴婢들이 모두 게을러서 일들을 안 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지나친 일이다. 그 중에 우심한 자를 가려서 매를 쳐서 경계를 해야 하겠다. 은정(奴)이 퇴계<sup>31)</sup>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령에 보낼 수는 없으니 우선 그

27) 汝行遲速亦具前書，依吾所命四月間量隙上來，則凡祭祀農作成造等事皆順，故云。(『全書』遺集內篇 卷7)。

28) 吾之待秋而歸已爲太晚，至秋萬無不歸之理，汝今棄來，則家無幹奴全廢耕農，歸當何待，故不已云云耳。(上同)。

29) 榮川秋麥想已熟矣，連同奴不可全付監打，明日暫往監收而來爲可。(『全書』遺集 卷7・8)。

30) 銀夫者，今年麥打作至今不報，前年互換餘穀及稷換木等訖不上送，其去年身貢亦不送一匹，頑慢莫甚，須痛懲——推來爲可。(『全書』遺集 内篇 卷6)。

31) 퇴계는 46세에 장인이 별세하자 휴가를 얻어 잠시 고향에 머물렀는데, 장인의 장사를 지내고도 귀환하지 않아 그 해 5월에 관직(통훈대부·정3품 당하판)이 해임되었다. 당시 집 앞 시내의 속명이 '菟溪'였으나 이때 '菟' 자를 '退' 자로 바꾸고 그것을 자신의 號로 삼았다. 그 해 11월에는 퇴계 동쪽에 養眞菴을 짓고 학문 연구에 몰두하였다. 이 때 퇴계는 이미 벼슬

냥 두되 만일 여전히 일을 은피한다면 官에 부탁하여 그의 형을 잡아 가두고 다스릴 생각이니 다음 편지에 그의 하는 짓을 자세히 알려 주고 그 형의 이름도 아울러 알려주도록 하라.<sup>32)</sup>

위의 편지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퇴계의 모습과는 어쩌면 상반된다는 느낌이 들 만하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노비 역시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양반 지배층으로부터 가혹한 차별을 받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sup>33)</sup> 그렇다고 퇴계가 부당하게 노비를 착취했다는 典據는 발견되고 있지 않지만, 다만 농업 경영에서는 노비 사역을 철저히 시키고 있음이 여러 군데 보인다. 영산에 철저한 퇴계가 노동력의 근본인 노비의 게으름과 탈세를 묵과할 리는 없었을 것이다. 퇴계는 당시 16세기의 어려운 경제 구조 속에서 농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노비를 철저히 감독했다고 보는 것이 옳은 시각이라 여겨진다.

퇴계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 가산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퇴계는 투기 등 비법적인 방법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 그러한 예들을 논해 보기로 한다.

전에 말하던 금이의 논을 사는 문제는 사실 살만한 곳이기는 하다만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올해는 모두가 짚주림에 허덕일 우려가 있으니 어느 겨울에 후일을 생각한다 하여 쉽게 곡식을 내어서 田地를 살 수 있겠느냐? 내 생각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함께 죽음을 면할 방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 같다. 다른 일들은 조심해서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sup>34)</sup>

그리고 곧 이은 편지에서도 다음과 같이 재차 당부한다.

田畠을 사고 안 사는 일은 알았다. 이 뒤에 비록 부득이한 경우라도 사지 말아라.<sup>35)</sup>

이 때 아들 審은 논을 사려고 아버지인 퇴계에게 상의를 한 듯하다. 그러나 퇴계는 당장의 생활 안정을 먼저 생각하여 논을 사는 것을 국구 말리고 있다. 생계

에 뜻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듬 해에 다시 소명되어 상경한다.(『年譜』 46 · 47 세조 참조.)

32) 聞，奴婢等率皆怠慢，不事至爲過甚，擇其尤甚者，撻而警之可也，…… 銀丁雖不願仰役於退溪，若歸宜寧，則猶可姑治，若如前隱避，則當稱念因其兄而治之爲計，後書細報其？爲，并報其兄之名也。(『全書』遺集 外篇 卷5).

33) 李成茂, 『朝鮮兩班社會研究』(서울 : 일조각, 1995), pp.306~308 참조.

34) 前云金伊岱買事，果是合買之處，但更思之，今年舉有溝壑之憂，何暇爲後日計而輕出穀勿以買田乎，吾意千方百策共圖爲免死之計爲當，餘事慎停可也。(『全書』遺集 外篇 卷5).

35) 田畠買不買事知之，此後雖不得已處亦勿買。(上同).

유지 자체가 힘겨운 마당에 재산 증식을 도모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판단했으리라 짐작된다. “비록 부득이한 경우라도 사지 말아라.”는 말은 모험과 투기를 금하는 단호한 태도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퇴계는 그 자신의 家計 운영에만 관심을 쏟았을까? 퇴계 家書에는 자신의 가정 못지 않게 民生을 可憐하게 여기는 글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다음의 두 편지가 그런 경우이다.

농사는 어느 정도 결실이 될 것 같으냐? 들리는 말에 의하면 下道는 땅이 바짝 말라서 곡식이란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 백성들의 목숨이 애통하구나. 비록 우리 고장은 그런 대로 결실이 된다 하더라도 한 쪽이 저러하니 그 화를 같이 입어 안정하지 못할 것이 두렵다. 어쩌면 좋으냐?<sup>36)</sup>

보리가 잘 됐다니 백성들의 소망을 달래겠으며 비가 또 흡족히 왔다니 무척 기쁘겠구나.<sup>37)</sup>

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퇴계는 아들에게 주는 편지에서까지 백성의 고통을 걱정하고 있다. 시대의 지성이고 고위 공직자라면 經筵이나 혹은 나라의 政事を 의논하는 자리에서 백성의 삶을 걱정하는 의론을 얼마든지 표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행위는 신분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해야 할 행위에 해당한다. 그 보다는 오히려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 하는 말 속에 백성의 고통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솔직하게 들어 있지 않을까?

퇴계의 營產에서 특히 부각되는 점은 時宜適切한 營產이다. 그는 아들에게 항상 때에 맞추어 농사를 짓도록 당부하였다. 퇴계가 생존하던 16세기 당시에 비록 농업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단지 狀를 만들어 河川水를 灌溉水로 활용하는 정도였고, 아직은 농업기술의 대명사인 移秧法은 시행되지 않은 상태였다.<sup>38)</sup> 벼 농사의 경우는, 水利 施設의 미비로 인해 볍씨를 바로 뿌려 짓는 이른바 乾啓直播法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건답직파법이 널리 행해진 까닭은 봄가뭄이 심한 한국 기후상의 특성에 있었다. 그럴수록 시기를 놓치지 않고 때에 맞추어 耕農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밭농사의 경우 벼농사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특히 棉作은 당시 농민의 경영 가운데 매우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까닭은 貢賦의 대상물로서, 軍布로서, 노비의 身貢 재료로서, 그리고 通貨手段으로서 綿布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sup>39)</sup> 이와 관련한 편지들을

36) 農事結實之勢如何, 傳聞下道亦地無禾民命哀痛哀痛, 吾鄉雖粗熟一方如彼恐同被其患不得寧帖, 奈何奈何(上同 卷3·4).

37) 麥盛可慰民望, 而雨澤又足喜可想也(『全書』遺集 内篇 卷7).

38) 李泰鎮, 『朝鮮儒教社會史論』(서울 : 지식산업사, 1995), pp.74-81.

39) 金鴻植, 『朝鮮時代 封建社會의 基本構造』(서울 : 박영사, 1982), pp.60-66.

보기로 하자.

편지에는 아직까지 비가 없었다고 했는데 막실(奴)은 말하기를 12일 밤에 비가 와서 물이 생겨 그런대로付種을 할 수 있다고 하니 그렇다면 어찌 참으로 다행이 아니겠느냐? 다만 이미 말라 버리고 벌레먹어버린 밀, 보리는 역시 희망이 없겠구나.<sup>40)</sup>

목면을 심어 가꾸는 일은 늦산을 시켜서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런데 이 곳은 成造하는 일 때문에 모든 농사가 남들에게 뒤졌는데, 또 役奴들이 많이 일에 빠져서 뜻과 같지 않아 때를 놓치는 것이 많으니, 이것이 걱정이다.<sup>41)</sup>

들으니 네가 참밀을 여기 심으려고 한다는데, 역시 한가한 종 등을 시켜서 때를 놓치지 말고 와서 심는 것이 좋겠다.<sup>42)</sup>

위와 같이 늦게나마 볍씨를 뿌리게 된 것을 매우 기뻐하고, 반면에 면화를 때에 맞추어 심지 못함을 걱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퇴계의 또 다른 철저한 면모를 보여 주는, 다음의 세 가지 편지글을 보기로 하자.

잣떡 열 네 개를 보내니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나누어 드리거라.<sup>43)</sup>

백첩선 두 자루, 칠선 두 자루, 참빗 다섯 개, 먹 한 장, 붓 한 자루를 보낸다. 백첩선과 참빗은 너의 처에게 전해주면 좋겠다.<sup>44)</sup>

꿀 두 되, 석이 두 말, 감 50개를 보내니 받아서 써라. 생강 한 봉지가 의령에서 왔기에 보내니 반만 갈라서 쓰고 나머지 반은 퇴계<sup>45)</sup>에 주어라.<sup>46)</sup>

우의 편지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계는 매사에 무척 치밀하게 대처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집안 살림을 규모 있게 꾸려 나가다 보면 부채 한 자루, 감 1

40) 書云，尙未得雨，而莫失言，十二日夜得雨水生稍可付種，若然則豈非大幸大幸，但已枯已虫之兩麥則更無望矣，家用當窘固所預料而他無計策，只宜痛為節儉耐辛苦以待天命而已(『全書』遺集 外篇 卷5)。

41) 木綿耕種事當教荔叱山使無過時，但此處因成造凡事皆後於人，又役奴多闕事不如意失時者多，是為慮耳(上同 內篇 卷6)。

42) 聞，汝欲種真麥于此，亦令閑奴等，來種及時亦可。(上同)。

43) 柏子餅十四送去，祖母氏母氏前分呈。(『전서』遺集 外篇 卷5)。

44) 白貼扇二柄，漆扇二柄，眞梳五介，墨一錠，筆一柄送去，貼扇眞梳爾婦處傳與為佳只此。(上同 卷6)。

45) 주) 30 참조。

46) 清蜜二升，石耳二斗，柿子五十箇送去，領用為可，生薑一封來自宜寧，故送去，分其半用之，其半送于退溪。(上同 卷5)。

개라도 소중했을 것이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세세하게 쟁기는 퇴계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다른 생활인의 자상함을 엿볼 수 있다.

## 2) 검소한 생활 자세

퇴계의 경제 생활에서 우리에게 가장 감동을 주는 것은 그의 검소한 생활 자세이다. 퇴계가 검소했기에 가난 속에서도 그의 학문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퇴계가 治產理財에 탐닉하고 사치한 생활을 했더라면 오늘날의 퇴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퇴계의 검소한 생활 면모를 살펴보기로 하자.

내가 언제나 추위가 두렵기에 털옷이 없을 수 없다. 그런데 한 개의 羊裘(양털로 만든 걸옷)를 20년을 입다 보니 죄다 높아서 떨어져버렸다. 이것이 적은 일이 아니 다만 새로 살 밀천이 없구나.

그러나 그 값이 몇 필이나 드는지 알아서 점차 성사시키고 싶으니 막동이(奴)를 불러서 羊皮 철릭(무관의 公服)은 값이 몇 필이나 하고 중치막(벼슬 못한 사람이 나들이 할 때 입던 옷옷)은 값이 몇 필이나 하는지 물어보고, 정확한 숫자는 편지로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전에 들어너 철릭의 값이 25필이라고 하는데 이는 필시 시종의 行用木 무명으로 쳐서 그럴 것이고 正好木이라면 이렇게야 많이 가겠느냐? 중치막의 값이 싸다면 중치막을 사는 것도 한 방법이다.<sup>47)</sup>

위의 편지는 62세에 손자 안도에게 쓴 것이다. 아무리 羊裘라지만 20년을 입어 죄다 떨어져버렸다 하니 혀를 내 두를 만하다. 그리고 구입할 밀천을 걱정하고, 구입하더라도 일반 양인이 입는 옷을 사는 방법까지 말하고 있다. 이 때 퇴계는 종2품의 동지증추부사를 사직하고 향리에 내려 와서 저술 활동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조야에 이름난 대학자 고관출신이고, 수없이 출사와 사퇴를 반복했으며, 또 언제 왕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지 모르는 신분이었다. 퇴계의 검소한 생활은 젊을 때부터 실천되어 왔다. 이와 관련한 편지를 보기로 하자.

나의 갓, 신발 등의 물건은 모두 해어져서 새 것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으니 지금 남아 있는 품질 좋은 무명 너댓 필을 지금 간 사람 편에 보내주면 좋겠다.<sup>48)</sup>

위의 편지는 단양군수로 재직하던 48세에 寫에게 쓴 것이다. 퇴계는 중앙에서 정3품의 당하관 벼슬까지 한 후 48세에 스스로 외직을 요청하여 이 때 단양군의 군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맡은 고을의 수령으로서 갓이나 신발 등의 대수롭지 않은 물건조차도 해질 때까지 착용할 정도로 검소했음을 알 수 있다. 퇴계

47) 吾常畏寒毛衣不可無, 而一羊裘二十年今盡穿破, 불시소사이무가매지자위민, 연육지기가당용  
기필이

48) 且吾笠子靴子等物皆破不可不改, 遺在好品木, 四五疋今去人付送亦可(『全書』遺集 卷7).

의 검소한 생활은 본래 몸에 배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퇴계는 아들에게도 검소한 생활을 하도록 간곡히 권유하고 있다.

너의 耳掩(귀마개)은, … 간신히 좀 팬찮은 것을 구해서 만들어 보낸다. 네가 무척 기다리는 줄을 알면서도 이처럼 늦어지고 게다가 좋지도 못하니 안타깝구나. 그러나 몸에 服用하는 물건을 기어코 좋은 것으로 하려는 것은 大病이니 이 정도면 무방한 것이다. 이 점을 유념하거라. 세 필 반만 주고 반 필은 남겨두었다. … 나는 아직 章服(조선 시대 관리들이 입던 官服)을 갖추지 못했는데 한 벌만 마련하려 한다. 이것은 말을 사고 싶기 때문이다.<sup>49)</sup>

위의 편지는 정3품의 上護軍으로 재직하던 52세에 30세의 아들 窩에게 쓴 것이다. 아들은 서울에서 벼슬하는 아버지에게 귀마개를 사 보내도록 부탁했고, 아버지는 가격을 고려하면서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값싸고 팬찮은 것을 구하다가 겨우 하나를 구하여 단 한 명뿐인 아들에게 보낸 것이다. 그러면서 좋은 것을 사주지 못함에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아울러 검소한 차림새를 하도록 훈계하고 있다. 그리고 네 필을 가지고 사려다 반 필을 남겨 두었다는 말을 첨가하여 저축심을 깨우치고 있다. 이 편지 바로 앞의 편지에서 값이 비싸고 좋은 가죽이 없어서 사보내지 못함을 이미 유감으로 표명하였다.<sup>50)</sup> 실로 더없이 자상하고 교육적인 아버지의 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위의 편지를 통하여 이 때까지 퇴계는 아직 정식 관복을 갖추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단양·풍기군수를 역임했고, 성균관대사성(정3품 당상관)까지 역임한 고관의 신분이었다. 이제 마련하려는데 그것도 단 한 벌만 마련하려 하고 있다.

퇴계에겐 검소한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었기에 선물을 받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다. 다음의 편지를 보기로 하자.

말하던 솜은 내가 이번 길에는 새 옷을 만들지 않고 입던 옷을 이미 다 폐메어 놓았기에 지금은 쓸 곳이 없으므로 받는 것이 미안하니 좋은 말로 사양하고 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鞍匣(발 안장 위를 덮는 헝겊)은 길 떠나는 데 선물한 것이고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므로 받는 것이 무방할 것 같다.<sup>51)</sup>

49) 汝耳掩 … 艱求稍好者造送, 知汝苦待, 如此稽緩又非甚好可恨, 然凡服用之物必求好品此乃大病止此不妨, 知之知之, 只給三匹半其半匹遺在, … 余章服衣時未備, 一領欲成, 此且辱買馬(『全書』遺集 卷21).

50) 汝耳掩, 以試場時物價騰貴, 且無好皮, 莫同者每每督之, 尚未買來, 今未及造送, 恨恨, 故少待之(『전서』유집 卷19).

51) 繡子吾於此行不製新衣, 故衣補綴已訖, 今無用收之未安, 善辭回, 納爲佳鞍甲, 則爲行臚之又吾乏, 收之似無妨(『全書』遺集 卷31).

위의 편지는 57세에 쓴 것이다. 아마 어디엔가 행차를 할 예정이었고, 知人 중의 어떤 사람이 새 옷을 만들어 입고 가라는 뜻에서 솜을 선물했던 듯하다. 그러나 퇴계는 입던 옷을 이미 다 꿰메어 놓았다 하면서 선물을 사양하고 있다. 이 때는 향리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이미 당상관을 수 차례나 역임한 고관 출신이었다.

여기서 조선 시대의 양반의 삶에 대하여 잠시 일별해 보기로 한다. 조선사회는 양반사회였다.<sup>52)</sup> 양반은 조선 사회의 지배 계층으로서 법제상으로 제 특권을 보장받고 있었다. 양반은 토지소유, 國役, 교육, 과거, 관직, 형벌에 대한 제 특권을 보장받으며 公侯之樂을 즐겼다. 더구나 문과에 급제하게 되면 관직을 보장받으며 출세가도를 달리게 된다.<sup>53)</sup> 급제 후 특히 玉堂(홍문관), 臺諫, 銓郎, 議政, 史官, 承旨 등의 직책은 가문이 좋고 학문이 뛰어 나지 않으면 결코 맡을 수 없는 이른바 清要職에 해당한다. 퇴계는 좋은 문벌 출신이 아닌, 그저 지방의 한미한 中小地主의 후손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급제 후 홍문관, 의정부, 사헌부 등의 기관에서 오래 재직했고, 經筵에 참여하여 임금을 가까이 모셨으며, 학자로서의 영예인 대사성도 이미 두 차례나 역임하였다. 이러한 신분임에도 퇴계는 옷을 꿰메어 입었던 것이다. 정말 검소한 선비가 아니고서는 행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한편 퇴계는 생활필수품도 사치스런 것은 사용하지 않은 듯하다. 다음의 편지를 보기로 하자.

阿蒙이 이제 배운 글자를 안다니 매우 기쁘다. 『千字文』을 틈나는 대로 써서 보내야겠는데 좋은 종이가 없어서 쉬 떨어질 것 같다.<sup>54)</sup>

위의 편지는 퇴계가 50세 경에 쓴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사랑하는 장손자(安道-초명은 阿蒙)가 처음으로 글자를 배워 안다는 소식을 듣고서 기쁜 나머지 『千字文』을 손수 베껴 보내었다. 그런데 좋은 종이가 없어 창호지에 써 보내면서 쉽게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평소에 좋은 종이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생필품을 미리 충분히 구비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소량 구비하여 사용했음을 알려 주는 대목도 있다.

편지지가 떨어져 가니 거기서 冊紙를 사놓았다가 사람이 오거든 대 여섯 권 보내 거라.<sup>55)</sup>

52) 李成茂, 앞의 책, pp.37-60 참조.

53) 조선시대 양반에 대하여 朴趾源은 이렇게 말한다. “하늘이 백성을 놓음에 그 백성이 넷이다. 넷 중에 가장 귀한 자는 士이다. 양반이라 일컬으면 利가 이보다 큰 것이 없다. 밭갈지 않고 장사하지 않으며, 文·史를 조금만 이해해도 크게는 文科에 합격하거나, 적어도 進士가 된다. 문과의 紅牌는 두 자(尺)에 지나지 않으나 百物이 구비하니 돈자루라 하겠다.” (『兩班傳』)

54) 阿蒙始知學字云深喜, 千文隨當書送, 但無好紙恐易破(『全書』遺集 内篇 卷6).

위의 편지는 52세에 정3품 당하관(상호군)으로 재직하면서 아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분이다. 학자 관료에게 있어 편지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건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퇴계는 미리 대량으로 준비해 놓고 사용하지 않았던 듯하다. 그것도 서울에서 구입하면 더 편할텐데 향리에 있는 아들에게 구입을 부탁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도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리라 여겨진다.

퇴계의 검소한 생활 자세는 임종에 이르렀을 때 절정에 달한다. 그는 서거하기 4일 전에 조카甯에게 ‘遺誠’를 쓰게 한다. 퇴계의 ‘遺誠’ 가운데 몇 가지 조목을 보기로 하자.

1. 國葬을 하지 말라. 該曹(禮曹)가 관례에 따라 사용하기를 청하면 기필코 遺令임을 칭탁하여 疏를 올려서 固辭하라.
1. 油蜜果(유과)를 사용하지 말라. 果實이 부족하면 草作하여 平掛로 設用할 것이며, 그 외에는 일체 사용하지 말라.
1. 묘에는 비석을 세우지 말고 단지 작은 돌에다 전면에는 ‘退陶晚隱眞城李公之墓’라 적고, 후면에는 鄉里, 世係, 志行, 그리고 出處를 간략히 기술하되 『家禮』중에 말한 것과 같이 하라.<sup>56)</sup>

종1품의 고관을 역임했고, 당대 최고의 석학으로서 16세기라는 한 시대의 획을 그은 大儒의 유언으로는 너무도 소박하다. 이는 그가 평생 동안 세상의 명리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검소하게 살아왔기에 가능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퇴계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검소를 실천했고, 또한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려 했다 할 것이다.

### 3) 성실한 납세

주지하는 대로 조선 왕조의 국가 운영은 백성에게서 징수하는 각종 租稅로 운영되었다. 수납체계는 크게 地租(田稅), 儻役, 및 貢物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토지 제도에 기인하는 조세 제도는 조선 왕조의 혈맥과도 같았다. 이에 대하여 약술한 후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地租는 토지를 경작하는 일반백성이 부담하는 대표적인 租稅이다. 퇴계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와 前後妻邊으로부터 물려받은 私田외에 公田을 지급받은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私田의 전세를 납부한 셈이 된다.

퇴계 당시에 적용된 田稅는 公私田 공히 세종 26년(1444)에 제정된 田分年分

55) 簡紙難繼, 其處買在冊紙, 後來人五六卷送來(『全書』遺集 外篇 卷5).

56) 一, 毋用國葬, 該曹循例請用, 必稱遺令陳疏固辭. 一, 勿用油蜜果, 果實不足草作平掛設用, 其餘一切勿用可也. 一, 勿用碑石, 只以小石書其前面云退陶晚隱眞城李公之墓, 其後惟略序鄉里世係志行出處大概如家禮中所云(『全書』遺集 外篇 卷7).

法을 따르고 있었다. 이는 그 후 『經國大典』에 구체화되어 명시되었고, 임진란(1592) 이전까지는 개정되지 않았다. 즉 전국의 토지를 6등급으로 구분하여 그 것들의 상호부동한 면적으로 같은 명칭의 1結을 구성하고, 稅額은 그 해의 풍흉을 심사하여 토지 1結 당 최상(上上年) 20斗에서 최하(下下年) 4斗까지 나누어 져 있었다.<sup>57)</sup> 세종 연간에는 그래도 토지 1結 당 평균 10~14두의 곡물이 징수되었으나,<sup>58)</sup> 16세기 이후에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年分9등의 査定과 決定에 있어서 군현의 수령과 감사, 정부 등 각종의 관리들과 기관들 사이의 농락과 흥정이 복잡하게 얹혔고, 또 양반지주들의 농락도 있어, 16세기 중엽 이후에는 연분9등은 다만 법전상의 문구에 그치고, 실지로는 전국 각지의 연분이 언제나 일률적으로 下下年, 즉 세액이 1결 4두로 고정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sup>59)</sup>

퇴계는 누구보다도 납세에 철저하였다. 그가 1결에 몇斗의 전세를 납부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家書의 여러 곳에서 납세를 걱정하고, 또 철저히 행하기를 아들에게 권하고 있다.

듣건대, “영천(영주)의 집곡식 5~6석을 官封한 뒤에 네가 종자로 썼는데, 영천의 城主(수령)가 이미 관찰사에게 보고한 수량이기 때문에 비록 면제하려 하나 형세가 면제할 수 없어 처리가 어렵다” 운운하니 이 말이 참으로 그러하냐? 만일, 이미 관봉하였으면 곧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까닭없이 그것을 썼다면, 이것은 네가 망령되이 헤아리고 적의함을 잊은 것이다. 어찌하며 어찌하랴. 만일, 무사하지 못하거든 성주 앞에 가서 사죄하여 적의함에 따라 선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옳다.<sup>60)</sup>

이 편지는 풍기군수를 무단棄職한 후 2년 째 벼슬없이 향리에 머물고 있던 51세에 아들에게 쓴 것이다. 아들 窩이 播種할 종자가 모자라 이미 보고한 곡식을 종자로 썼다 하니 호되게 질책하고 있다.

당시 田稅의 査定 및 徵收 절차는 “모든 田地는 매년 9월 15일 전에 수령이 그 해 年分의 등제를 사정하고 관찰사는 다시 이를 심사하여 上申하면 의정부·6조가 함께 의논하여 다시 왕의 재가를 얻은 다음 收租한다.”<sup>61)</sup>는 『經國大典』의 규정을 따르고 있었기에 이미 보고한 곡식량은 변경하기가 불가능하였다. 어려운 家計를 철저한 營產으로 겨우 꾸려 가면서도 납세만큼은 절대로 포탈하지 않으려는

57) 『世宗實錄』 26년 11월 戊子.

58) 權丙卓, 韓國經濟史(서울 : 박영사, 1992), p.42.

59) 박시형, 앞의 책, pp.123~124 참조.

60) 詮聞榮川家穀五六石, 官封後, 汝以種子用之, 榮川城主, 已既以報使之數, 雖欲除, 勢不可除, 處之爲難云云, 此言信否, 若已官封, 乃非我所擅之物也, 無端用他, 此汝妄料失宜處, 奈何奈何, 若不能無事, 須爲來謝罪於城主前, 庶幾隨宜善處爲可(『全書』續集 卷7).

61) 경국대전 戶典, 收稅條.

선비의 기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또 다른 편지를 보자.

성주가 곡식을 바치지 않는 데 대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 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미 보고한 곡식인데 어떻게 아무런 조치가 없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네가 의리의 옳고 그름을 몰라서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만일 성주가 화를 내어 감사에게 보고해서 죄를 청한다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네 집에서 고루 나누어서 거두어 바친다면 쉬이 갚을 수 있고 너 또한 주립도 면하고 죄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족이 나누어 바치는 방법(一族分徵之法)이라는 것이다. 소홀히 생각 말고 조처하도록 해라.<sup>62)</sup>

53세에 上護軍(정3품 당하관)으로 재직하면서 쓴 듯한 위의 편지에서도 아들에게 철저한 납세를 말하고 있다. 이 때 아들 窩은 아마도 가정 형편상 보고한 전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퇴계는 一族이 나누어 바치는 방법 까지 제시하며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 그래도 염려가 되었던지 곧 이어 또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최후통첩을 보낸다.

절대로 포탈해서 면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sup>63)</sup>

그러나 퇴계는 늘 군색하게 살았기에 조세를 제 때에 납부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퇴계는 때로 조세를 바치기 위해 여러 방도를 찾아 본 듯하다.

동지중추부사(종2품)로 있다가 사직한 후인 59세에 아들에게 쓴 편지를 보기로 하자.

稅米를 여기서 마련해서 바치는 일에 대해서도 전번 편지에 자세히 언급했으니 종이(奴)가 올 때 가홍의 세미의 시가를 자세히 물어서 한 필에 얼마씩이나 되는지를 알아 가지고 오도록 지시해라. 무명으로 계산해서 주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단지 오는 도중에만 물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반드시 먼저 바치기 위해 내 왕한 사람이 있을테니 물어서 알려주어라<sup>64)</sup>.

당시 租稅는 水田에서는 米穀, 旱田에서는 大豆(太)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했으

62) 城主之意以不納穀甚不快意云，此不足怪已報之穀何可無置處耶，此汝不知義之故不覺墮於罪，若城主發怒而報使請罪則不可說也，須依前送書內別幅所云，四家攤分徵納則庶家易償而汝亦免飢免罪此正所謂一族分徵之法也，須無忽圖之(『全書』遺集 外篇 卷5)。

63) 千萬勿作免死之計(上同)。

64) 稅米自此備納事亦詳前書，終伊來時須細問可與稅米時價一匹幾許而來事教之欲以木計給，故云云，非但路中問之其處亦必先納往來人問而通之(『全書』遺集 內篇 卷8)。

나 他穀이나 錢, 布 등으로의 代納도 허용되었다. 그러기에 남세에 그다지도 철저한 퇴계였지만, 家用이 어려웠기에 他物品으로 代納할 방도를 강구했던 것이다. 위의 편지를 쓰기 전에도 이미 두 번이나 아들에게 稅米를 布로 代納하는 방법에 대해 상의하는 편지를 보낸 바 있다.

한편, 당시 국가에서는 농민이 경작하는 토지에 대해 田租를 부과하는 외에 각 戶에 貢物도 부담시키고 있었다.<sup>65)</sup> 貢物의 징수는 품목, 수량의 결정 등 그 징수 방법상의 불합리성에서 폐단이 매우 커졌으며, 따라서 농민들에게 있어서 공물 부담은 田租 못지 않게 큰 것이었다. 고려시대 이래 各 戶 단위로 부과된 공물은 常貢과 別貢으로 구분된다. 常貢은 각 戶가 정기적으로 수납하는 지방 특산물이고, 別貢은 정부나 관사에서 필요할 때 수시로 징수하는 특산물이다. 이 중에서 別貢은 고려시대 이래 일반백성을 괴롭히는 한 전형적인 역할을 해 왔다. 더구나 공물의 책정시 그 지방의 생산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농민에게 일률적으로 부담시키는 관행이 있었고, 수납의 절차도 복잡하였다. 그러기에 향리에서 생산되지 않는 공물을 부담하고, 또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청부업자가 공물을 대납하는, 이른바 防納이 유행하게 되었다. 官과 결탁한 방납업자의 횡포는 실로 극에 달하여 防納之弊는 16세기 조선의 불합리성의 본보기가 되었다.<sup>66)</sup> 이와 관련한 퇴계의 편지를 보기로 하자.

시골 생활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데, 이번에는 또 숯을 바치는 일로 소동이다. 한 섬을 바치는 데 무명은 5~6필, 쌀은 닷 말까지 하는데, 남들이 바치는 것이 이리하다. 그래서 부득이 종(奴) 철손을 시켜서 무명 3필을 가지고 가서 사서 本處에 바치도록 하였으나, 정작 그 곳 거래 가격의 고하를 몰라서 남을지 모자랄지는 멀리서 판단할 수 없으니 신경이 쓰인다.<sup>67)</sup>

56세에 향리에 거주할 때 쓴 위의 편지에는 공물과 관련한 의견과 대응 방식이 잘 나타나 있다. 숯을 바치는 경우인데, 남들이 무명으로 환산하여 5~6필, 쌀로는 닷 말을 바친다고 하니 防納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우선 숯을 바치는 일을 소동이라고 말하니 당시 공물의 폐해를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퇴계는 무명 세 필을 종에게 주어 본처에 가서 숯을 사서 바치도록 시키고 있다.

65) 趙曠濱, 앞의 책, pp.209-211 참조.

66) 中宗 年間의 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각 고을의 공물을 살펴보면, 토산물이 고르지 못한 데가 있어서 모두 방납하기에 이르렀는데, 한 되를 대납하고 한 말을 징수하며, 베 한 필을 대납하고 베 세 필을 징수하고 있으니, 이로 인하여 쌓인 폐단이 극단에 이르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增補文獻備考』, 田賦10 貢制).

67) 就中鄉居事事多難, 今又以納炭事騷動, 一石之納至木五六疋米五斗, 他人所捧如此, 不得已令奴哲孫, 持木三疋買納宇本處, 猶未知彼中買價之高下, 其有餘不足未得遙度慮慮(『全書』遺集內篇 卷8)

국가의 貢賦 제도를 수용하되 방납의 피해를 용납하지 않고, 또 당하지 않는 치밀함을 보여 주고 있다.

#### 4) 경제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을 거론할 때는 대체로 개발, 투기와 모험의 억제, 공정한 분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퇴계의 家書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 역시 산견되고 있어 검토해 보려 한다. 거기마다 특히 덧붙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 노동력의 원천인 노비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조선 시대의 경제적 기본 구조는 물적 요소로서의 토지, 인적 요소로서의 노비, 그리고 생산 관계로서의 조세 제도 등으로 구성된다. 노비 문제 역시 조선 시대의 경제 구조로서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여기서는 퇴계의 개간 사업, 공정한 분배관, 그리고 노비 사역 태도 등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우선, 개간 사업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조선조가 개국하고부터 개간 사업이 장려되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sup>68)</sup> 개간은 조선조 초기에 있어서 농장 발전의 기본 방도였다. 無主 황무지를 개간하는 자들은 왕실을 비롯한 권문세가들과 지방의 품관, 향리 등이었다. 이들은 황무지에 대한 개간권을 折受하여 家奴로 하여금 경작케하거나, 또는 농민을 모집하여 수확량의 반을 수취하는, 竝作半收로 경작케 하여 토지 소유자로 등장하였다.<sup>69)</sup> 퇴계 역시 개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退溪家가 정착한 禮安縣은 退溪家가 정착하기 전까지는 농업생산성이 매우 열악한 지대였다. 그러나 개간 가능성이 많아 노동력만 있으면 새 전답을 쉽게 일굴 수 있었다. 여기에 퇴계의 조부 때부터 퇴계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역 개발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退溪家는 예안현의 향촌 사회를 영도해 나갈 수 있었다.<sup>70)</sup> 이와 관련하여 아들에게 쓴 편지를 보기로 하자.

田畠을 만드는 사람은 그 꺼리고 싫어함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다른 방법이 어려운 형편이므로 그 稅價를 면제해서 시켜서 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그렇게 한다면 저들이 기꺼이 하지 않겠느냐?<sup>71)</sup>

위의 편지에는 개간자에 대한 대우 방법이 잘 나타나 있다. 아마 일반 농민을 고용하여 전답의 개간을 맡겼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일반적인 추세는 개간농지에 대하여 竝作半收制가 널리 시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퇴계는 개간자에게 稅價를

68) 박시형, 앞의 책, pp.144-147 참조.

69) 조기준, 앞의 책, pp.176-177.

70) 이수건, 앞의 책, pp.243-246 참조.

71) 作田畠人, 非不知其厭憚, 他條勢難, 故欲除其稅價, 而使爲之, 則彼無乃樂爲之耶(『全書』遺集 內篇 卷6).

면제해 주는 획기적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 기꺼이 개간 사업에 응할 것임은 틀림없다. 물론 개간 사업은 성공리에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퇴계의 분배관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16세기 당시는 '子女均分相續制'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었다.<sup>72)</sup> 그렇지만 실제로 재산 분배 과정에 형제 간에 한 목소리를 내기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퇴계의 家書에는 이와 관련한 글이 몇 군데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무릇 같이 태어난 자 사이에는 모든 일이 골라야만 家道가 무너지지 않는 법이다. 고르지 못한데도 마음을 편안히 가진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어려운 일이다. 만일 네가 이 일에 대하여 반성하여 말하기를, “내 동생을 보니 아직도 나보다는 노비가 부족하다. 그런데도 내가 만일 더 얻게 된다면 내 동생은 더욱 부족하게 될 것이다. 형제 사이는 한 몸이라고 했다. 한 몸이라면 당연히 한 마음이어야 한다. 그러니 내 동생이 부족한 것은 곧 나의 부족함이 되는 것이다.”한다면, 우애하는 마음이 뭉클 일어날 것이며 다른 생각은 자연 없어지게 될 것이다.<sup>73)</sup>

위의 편지는 퇴계가 46세에 아들 窯에게 쓴 편지이다. 아마 長子인 窩과 次子인 宅<sup>74)</sup> 사이의 노비 분급<sup>75)</sup> 과정에서, 퇴계가 窩에게 次子를 배려해 주도록 설득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보인다. 노비 역시 조선 시대 양반 계층에겐 중요한 재산이었기에, 위의 편지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 간의 재산 분배에 대한 퇴계의 기본 시각은 공정한 분배임을 알 수 있다. 아들이 생각하는 방법까지 인용문을 첨가하여 가르치는 데서 퇴계가 당시의 법규인 '자녀균분상속제'에 얼마나 철저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57세에 아들 窩에게 쓴 또 다른 편지를 살펴 보자.

모든 것은 네가 매사에 있어 善處하는 일 뿐이다. 여러 말이 필요 없다. 사람이

72) 이수건, 앞의 책, p.46.

73) 凡爲同生者，每事平均然後家道不壞，至於不均而能平其心者，人所難也，汝於此當反而思之。曰：吾弟見，得奴婢尚欠於我，我若加得，則吾弟又加欠矣，兄弟一體爲，一體亦當一心，吾弟之欠，猶吾欠也，則友愛之心油然，而他念自消釋矣(『全書』遺集 外篇 卷6).

74) 퇴계의 자녀는 初娶 許氏 부인에게서 낳은 窩·宅의 두 아들과側室에게서 낳은 庶子 寂이 전부이다. 再娶 權氏 부인에게서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次子인 宅은 21세(1548)의未婚으로 죽는다. 宅의 죽음에 대하여 퇴계는 窩에게 편지를 보내 “이런 재앙을 불러온 것은 내가 당초에 잘 조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니 더더욱 마음이 아파서 말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참상의 슬픔을 토로한다.(『年譜』46세조 및 『全書』遺集 外篇 卷5 참조).

75) 조선시대의 노비 문제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어 있어 관련 서적을 많이 훑어 보았다. 그렇지만 16세기 당시의 가족간 노비 분급 규정에 관한 연구 자료는 입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때 분급된 노비의 성격이나 종류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 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단, 이 때 窩이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 결혼 때 분급하는 新奴婢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이수건, p.251 참조).

대저 선한가 악한가의 나누임은 모두 재산을 배분할 때에 달려 있는 것이다. 너는 이것을 몰라서는 안 될 것이다.<sup>76)</sup>

앞의 편지와 마찬가지로 위의 편지에서도 재산 분배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위의 편지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산의 공정한 분배가 사람이 선한가 악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 이런 시각은 경제적 합리성의 극치라고 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의 편지에서 우리는 퇴계의 또 다른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嫡庶 關係에 대한 퇴계의 시각이다. 퇴계에게는 側室에게서 태어난 寂이라는 庶子가 있었다. 寂은, 此子 案의 생후 보름 만에 초취 허씨부인이 죽자 案의 양육을 위해 들어 온 유모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다. 위의 편지가 57세에 쓴 것이고, 퇴계 나이 48세에 次子 案가 죽었으니, 이 때 퇴계에게는 長子 窩 외에는 庶子 寂 뿐이었다. 그러니 위의 편지는 窩과 寂 사이의 재산 분배와 관련된 편지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위의 편지에서 보듯이 퇴계는 정실 아들 窩에게 측실에게서 난 아들 寂에 대한 배려를 간절하게 지시하고 있다.<sup>77)</sup>

한편, 조선 왕조 국가 운영의 기반이 토지와 거기서 나오는 조세에 있음을 앞에서 기술하였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모두 노비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그렇다면 조선조에서 노비는 국가의 핵심 노동 계층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신분 사회를 근간으로 하는 조선 왕조에서 노비 사역은 국가를 지탱하는 보루였다. 양반 지배층도 다름 아닌 토지와 노비를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무릇 노비는 主人의 수고로움을 대신하여 手足과 같이 부리니 土家의 盛衰는 실로 土田과 蒼赤(奴婢)의 有無에 말미암는다.”<sup>78)</sup>고 한 것이 그 예이다. 노비는 국가기관이나 土家에 소속되어 경작과 각종 雜役을 수행하였다. 이들의奉事가 있음으로 해서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온갖 사회적 권위와 경제적 이익을 마음놓고 누릴 수 있었다. 노비는 마치 가축이나 재산처럼 매매·상속·양도의 대상이 되었으며 노비가 上典의 말을 듣지 않거나 항거할 때는 綱常罪를 적용하여 엄벌에 처하였다. 이러한 노비는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公奴婢와 개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私奴婢로 나누어진다. 사노비는 다시 主家에 같이 살면서 잡역에 종사하는 率居奴婢와 독립된 가계를 가지고 主家에 身貢을 바치는 外居奴婢로 나누어진다. 외거노비는 주가의 직영 농장에서 멀리 떨어진 외지에 위치한 주가의 분산된 토지를 경작하는 자로서 그 경작관계는 일정한 並作料를 납부하는 병작농적 노비였다.<sup>79)</sup> 병작제란 토지소유

76) 餘在汝隨事善處，不須多言，凡人平生善惡之分，盡在於分產之時，汝不可不知也(上同).

77) 이 대목은 家書의 字句만을 해석하여 필자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단, 이 부분이 次子死後 宜寧 財產의 처리에 관한 내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필자로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78) 『文宗實錄』卷7, 文宗 元年 5月 丙辰.

자가 토지를 농민이나 외거노비에게 대여하여 경작케하고 수확의 半을 관례적으로 수취하는 제도이다. 이를 竝作半收制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15세기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16세기에는 보편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나 외거노비에 대한 주인의 착취는 竝作半收를 넘어서는 경우가 허다했다.<sup>80)</sup> 농장주들은 수확량 중에서 노비가족의 최소한도의 필요생산물을 제외한 일체를 수탈하고, 또 노비들의 머리 수에 의한 身貢을 수탈하는 등 모든 가혹한 방법을 다 했다. 우선 이와 관련한 퇴계의 편지를 보자.

들으니 너의 이 곳 전답은 이 종(奴)이 모두 半分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종이 이득이 없지도 않으므로, 제가 시킨 일을 맡았다하여 꺼려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런대로 괜찮겠다. 그러나 만일 속으로 원망하고 꺼리는데도 네가 강제로 시킨다면 매우 불가한 일이니 너는 이런 것을 알아서 매사를 넉넉하게 처리하여 원한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81)</sup>

위의 편지에는 아들 窯의 병작제 운영에 관한 퇴계의 의견이 들어 있다. 퇴계의 아들 窯 역시 당시의 관행에 따라 농장을 경작하는 종으로부터 수확량의 반을 수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퇴계 역시 이러한 병작반수제의 관행을 긍정하고 있다. 다만, 종이 병작반수를 거린다면 강제로 시켜서는 안 되고, 넉넉하게 처리하여 종으로부터 원한을 사지 않도록 충고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퇴계다운 모습이라 생각된다.

사적 농장의 경우를 살펴보았거니와, 官에서 징수하는 조세에 대해서도 퇴계는 너그러운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아들에게 준 다음의 편지를 보자.

이 중에 官司 가운데에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국곡은 진실로 납입을 재촉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곡식은 또 가려서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엄히 독촉함이 너무 지나치고 가려 받아들임이 너무 가혹하면 이같은 흥년에 백성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반드시 원망을 하게 될 것이니, 모름지기 적의함을 헤아리고 알맞음을 참작하여 행하도록 하라. 관청에 납부하는 것도 그러하다.<sup>82)</sup>

위의 편지는 69세에, 당시 奉化 縣監으로 재직하고 있던 준에게 쓴 것이다. 여기서 退溪는 官司에서 징수하는 조세의 수취 방법에 대하여 아들에게 충고하고

79) 이성무, 앞의 책, pp.184-190 : 박시형, 앞의 책, pp.146-156 참조.

80) 박시형, 앞의 책, pp.146-147.

81) 聞汝此處田畠，此奴皆受半分云，是則比奴不無所利，故不以任汝事爲憚乎，如是則稍可矣，若內懷怨憚，而汝強使之，則尤不可，汝須知此意，凡事優爲之，勿今生怨至可至可(『全書』遺集 内篇 卷6).

82) 就中官中凡事何如，國穀固不可不催納，其穀亦不可不擇捧，然若嚴督太過，擇捧太苛，則如此凶年，民不堪苦，必生大怨，須量宜酌中而行之，官廳所納，亦然(『全書』續集 卷7).

있다. 관사에서 조세를 징수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백성의 형편을 해 아려서 징수해야지, 흉년이 들어 민생이 고통스러운데도 무리하게 강요한다면 백 성의 원망을 받게 될 것이니 백성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징수하도록 권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경직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적의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경제 적 합리성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4. 맷는말

조선 시대의 대석학인 퇴계 이황 선생의 경제의식을 試論삼아 고찰해 보았다. 퇴계는 철학·교육·정치·문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저술을 남겨 놓았다. 그런데 유독 경제 분야에 대해서만은 저술을 전혀 남겨 놓지 않았다. 따라서 퇴계는 경제 사상가의 범주에서는 늘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퇴계가 아들을 비롯한 친 자손들에게 보낸 수백 통의 '家書' 속에는 늘 경제 문제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집안의 살림살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가계를 운영하려 했던 것이다.

퇴계는 당시 16세기라는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개인적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며 한 평생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친 자손에게 보낸 家書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어누 누구라도 친 자손에게는 거짓을 말할 리가 없다고 볼 때 우리는 퇴계의 家書를 믿을 수 밖에 없다.

치밀한 재산 관리자였던 퇴계는 다년 간의 관직 생활과 학문 활동 속에서도 長子를 통하여 집안의 살림살이를 늘 직접 챙기는, 철저한 살림꾼이기도 하였다. 비록 국가의 경제 문제 전반에 대한 거창한 이론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퇴계가 집 안의 살림을 운영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날의 어려운 경제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을 배울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퇴계는 어려운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 營產에 무진 애를 쓴 것으로 보인다. 영산에 대한 퇴계의 기본 시각은 道學者の 자세를 견지하면서 순리에 따라 대처해야지 理財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아들에게도 이 점을 늘 강조하였다. 그러나 항상 관직에서 사퇴하려 했고, 또 당시에 흉년이 연이어 겹치자 퇴계는 중년 이후 집안의 營產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54세에는 科試를 준비하기 위해 미리 상경하려는 아들에게 상경을 연기시키면서까지 집안의 농사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조선 시대에서 사대부가의 耕農은 주로 노비를 통하여 행해졌다. 노비는 노동력의 원천이었다. 퇴계는 영농 과정에서 노비 사역을 철저히 시키고 있다. 타작의 감독이나 田稅 수취를 노비에게만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아들이 직접 챙기도록 한 데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부당하게 노비를 착취하거나 전세

를 과다하게 수취한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집안의 살림살이 걱정 뿐만 아니라 백성이 겪는 경제적 고통에 대해서도 아들에게 안타까움을 토로함으로써 애민 정신도 보여 주고 있다.

퇴계의 경제의식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대목은 그의 검소한 생활 자세이다. 한 벌의 양털 옷을 20년 동안 입었고, 신발, 갓 등의 일용품을 해질 때까지 착용했으며, 57세까지 옷을 째매어 입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이도 좋은 종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아들에게도 몸에 착용하는 물건을 좋은 것으로 하려는 것은 大病이라고 하면서 검소를 가르쳤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러서까지 禮葬을 사양하고, 유밀파를 사용하지 말도록 했으며, 비석을 세우지 말하는 遺誠를 남겼다.

한편, 퇴계는 어려운 살림 살이 속에서도 당시 국가 운영의 혈액인 租稅 納付에도 철저하였다. 아들이 種子가 부족하여 이미 관청에 보고한 곡식을 사용했다 하니 호되게 질책하면서 포탈할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貢物 납부도 어떤 방식을 취하던 간에 조금도 빼지 않고 납부하였다. 그러면서 縣監으로 재직하고 있는 아들에게는 國穀의 징수를 감행하되 백성의 사정을 헤아려서 징수해야지 흉년인데도 너무 지나치게 징수하면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된다고 말하며 적의하게 처리하도록 권하는 유연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당시 향리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현실적인 모습이리라 생각된다.

이 밖에도 퇴계는 개간 사업에도 손을 댔고, 투기와 모험을 하지 않았으며, 공정한 분배를 강조했다. 개간 사업에 대하여 말하자면, 당시 개간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체로 그 수확물의 반을 지주가 수취하는 이른바 竝作半收制가 널리 시행되고 있었으나 퇴계는 稅價를 면제해 주면서 개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투기와 모험을 억제하여, 논을 사려는 아들에게 당장의 생활 안정이 더 시급함을 지적하며 부득이한 경우라도 전답을 사지 말도록 지시하였다. 형제간의 재산 분배 과정에서는 당시 시행되고 있던 '子女均分相續制'에 입각하여 공정한 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재산 분배 과정의 공정함이 사람의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아들에게 형제간에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도록 권하고 있다.

퇴계는 한국 성리학사에서 학문적으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퇴계의 경제관, 경제의식 등에 관한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고 있다. 필자는 이에 관한 고찰을 본고에서 시도해 보았다. 본고를 쓰면서 일관되게 느낀 점은 퇴계가 가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무척 애를 썼다는 사실이다. 학문적인 업적이 지대한 퇴계가 집안의 살림살이를 철저하게 운영했다는 것은 퇴계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 오리라 여겨진다.